

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

단지명	주요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
포항 블루밸리 국 가산업단지	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별 구역변경																								
	[단위 : m ²]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산업시설구역</th> <th>지원시설구역</th> <th>공공시설구역</th> <th>녹지구역</th> <th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 정</td> <td>3,606,158</td> <td>41,155</td> <td>1,170,231</td> <td>964,831</td> <td>5,782,375</td> </tr> <tr> <td>변 동</td> <td>8,673</td> <td>△21,056</td> <td>△177,817</td> <td>△68,884</td> <td>△259,084</td> </tr> <tr> <td>변 경</td> <td>3,614,831</td> <td>20,099</td> <td>992,414</td> <td>895,947</td> <td>5,523,29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	계	기 정	3,606,158	41,155	1,170,231	964,831	5,782,375	변 동	8,673	△21,056	△177,817	△68,884	△259,084	변 경	3,614,831	20,099	992,414	895,947	5,523,291
	구 분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	계																			
	기 정	3,606,158	41,155	1,170,231	964,831	5,782,375																			
변 동	8,673	△21,056	△177,817	△68,884	△259,084																				
변 경	3,614,831	20,099	992,414	895,947	5,523,291																				
○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 구역별 면적 재산정								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 및 지원시설구역 내 건축할 건축물 범위 변경 ○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																									
(신규) 장항국가생 태산업단지	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별 구역																								
	[단위 : m ²]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산업시설구역</th> <th>지원시설구역</th> <th>공공시설구역</th> <th>녹지구역</th> <th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면 적</td> <td>1,513,120</td> <td>58,322</td> <td>423,164</td> <td>216,479</td> <td>2,211,08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	계	면 적	1,513,120	58,322	423,164	216,479	2,211,085												
구 분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	계																				
면 적	1,513,120	58,322	423,164	216,479	2,211,085																				

● 환경부고시제2016-190호

환경부고시 「유독물질 및 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」(제2016-178호, 2016. 9. 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6년 9월 30일

환 경 부 장 관

유독물질 및 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

유독물질 및 제한·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고유번호 06-5-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06-5-6	노닐페놀[Nonylphenols; 25154-52-3, 104-40-5, 84852-15-3, 139-84-4, 136-83-4, 90481-04-2, 11066-49-2, Nonylphenol ethoxylates; 9016-45-9, 27177-05-5, 68412-54-4, 127087-87-0, 68412-53-5, 26027-38-3, 37205-87-1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	1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 · 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한다. 가. 가정용 세척제, 잉크, 페인트의 용도 나. 산업용·업소용 세정 및 세척제, 섬유· 가죽 가공 용도(단, 하폐수로 배출되 지 않는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하폐수 처리시설 유입 전 완전히 제거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.)
--------	---	---

CIRSIK&K Testing
 www.cirs-ck.com
 Hotline : 4006-721-723
 Email : test@group.com

별표 3 중 고유번호 06-5-6란의 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란의 8~15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고유번호	물질명	CAS No.	
06-5-6	노닐페놀[Nonylphenols, Nonylphenol ethoxylates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	***	
	7	Branched nonylphenol	90481-04-2
	8	Isononylphenol	11066-49-2
	9	Nonylphenol ethoxylates	27177-05-5
	10	α-(Nonylphenyl)-ω-hydroxy poly (oxy-1,2-ethanediyl), branched	68412-54-4
	11	α-(Nonylphenyl)-ω-hydroxy poly (oxy-1,2-ethanediyl), branched phosphates	68412-53-5
	12	α-(Isononylphenyl)-ω-hydroxy poly(oxy-1,2-ethanediyl)	37205-87-1
	13	α-(4-Nonylphenyl)-ω-hydroxy poly(oxy-1,2-ethanediyl)	26027-38-3
	14	α-(4-Nonylphenyl)-ω-hydroxy poly(oxy-1,2-ethanediyl), branched	127087-87-0
	15	1~14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	-

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 고유번호 06-5-6의 노닐페놀 [Nonylphenol ethoxylates; 68412-54-4, 37205-87-1, 26027-38-3, 127087-87-0] 제한내용 중 가목에 따른 잉크, 페인트의 용도로의 제한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● 환경부고시제2016-191호

「2014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」 고시(환경부 고시 제2014-97호, 2014.6.30.), 「2015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」 고시(환경부 고시 제2015-84호, 2015.6.30.) 및 「2016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」 고시(환경부 고시 제2016-124호, 2016.6.30.)에 대하여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「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.

2016년 9월 30일

환경부장관

2014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관리업체 변경

기존	변경	비고
- 업체명 : 코오롱위터엔에너지(주) - 업 종 : 폐수 처리업 -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테크 노파크II센터 S동 2325층 - 적용기준 : 업체 - 대표자 : 이수영	- 업체명 : 환경관리(주) - 업 종 : 폐수 처리업 - 소재지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88 - 적용기준 : 업체 - 대표자 : 임추섭	업체명 및 소재지 변경